

경상북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4863 호 2004. 9. 23. (목)

선	기 관 의 장
람	

경 상 북 도

■ 고 시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요건고시중개정고시(제2004-247호) 2

■ 공 고

- 제35회경상북도산업디자인전람회개최요강공고(제2004-351호) 6
- 운행제한차량통과높이상향조정노선공고(제2004-353호) 8
- 측량업등록공고(제2004-355호) 10

경상북도교육청

■ 조 례

-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제2832) 11

■ 훈 령

- 경상북도교육청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폐지규정(제129호) 14

시 군

■ 공 고

- 구미도시계획도로비산강변빌라옆소도로(소3-4호)개설사업인가를위한공람공고(구미시공고제2004-472호) 15

회								
람								

기 타

■ 공 고

○ 도로사용개시에관한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253호) 16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04-247호

고 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요건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4. 9. 23.

경 상 북 도 지 사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요건고시중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석유류의 원활한 수급과 석유 유통산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고 주민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청 및 등록요건)

- ① 석유판매업(이하 “주유소”라 한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주유소의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별표1]과 같다.

③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은[별표2]와 같다.

제3조(타법령과의 관계) 주유소의 설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문화재 보호법, 도로법, 농지법, 산림법, 가스관련법, 소방관련법, 환경관련법 등 다른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시장·군수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주유소의 입지여건, 대지확보 등을 감안하여 주유소의 유희공지에 조경, 녹지시설과 휴게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별표1]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1. 인적사항	석유사업법령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지하저장시설 : 20kl이상 나. 주유기 : 2대이상 다.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 : 1개소이상 라. 위치·구조 : 소방관계법령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취급유종	휘발유, 등유, 경유
4. 부대시설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경영다각화를 위하여 주유소 대지내에 소방법,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도로등과의 관계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주유소 진·출입로가 폭20m이상 도로(도로 계획선 포함)와 접촉하여야 한다. 나.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철도건널목이 있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용지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까지는 직선거리로 5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다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철도 건널목은 제외한다.

구 분	내 용
6. 주변환경과의 관계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과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과는 직선거리로 25m이상 떨어져야 한다. 1) 공동주택 2) 의료시설(약국제외) 3) 노인정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및 경계와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과는 직선거리로 50m이상 떨어져야 한다. 1) 의료시설 대지 경계선(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7호 관련 건축물)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 3) 학교출입문(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학교로서 인가청의 인가를 득한 학교) 4)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보육시설의 외벽(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시설)
7. 구비서류	가.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 규정한 주유소 등록신청서류 나. 건물 및 시설 배치도(면적 표기)

[별표2]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구 분	내 용
1. 위 치 2. 설치기준	주유소 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 부지내에 상시 개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 형 태 : 출입문은 외부에서 남·여 구분 설치하고, 수세식으로 설치 (다만 타법령 등에 의거 수세식으로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은 수거식으로 설치 가능) ○ 면 적 : 20.0㎡이상 ○ 대변기 : 남자 1개, 여자 2개이상 ○ 소변기 : 2개이상 ○ 세면기 : 남·여별 각 1개이상 ○ 거 울 : 남·여 화장실별 각 1개이상 ○ 환풍기 : 남·여 화장실별 각 1개이상 가. 주유소의 사업자는 화장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소독, 청소 등을 실시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파손 및 노후된 시설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주유소의 사업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지, 수건, 비누 등을 상시 비치하고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다. 주유소의 사업자는 이용객이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국·영문으로 표기한 안내 표지판과 출입문에 남·여 구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04-351호

제35회 경상북도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요강 공고

제35회 경상북도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9. 23.

경 상 북 도 지 사

1. 주 최 : 경상북도
2. 주 관 : 경주상공회의소
3. 출품자격 :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자·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업체
4. 제출서류
 - 가. 출품원서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알림마당 다운로드
 - 나. 주민등록등(초)본,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해당서류
5. 대회일정
 - 가. 출품접수 : 2004. 10. 13 ~ 10. 14 / 경주상공회의소
 - 나. 심 사 : 2004. 10. 22(금) / 경주상공회의소
 - 다. 결과통보 : 2004. 10. 25(월)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게시 및 입상자 개별 통보

라. 낙선작 반출 : 2004. 10. 25(월) ~ 10. 26(화) / 경주상공회의소

마. 시 상 식 : 2004. 11. 4(목) 11:00 / 경주서라벌문화회관

바. 전 시 : 2004. 11. 4(목) ~ 11. 7(일) / 경주서라벌문화회관

6. 출품요건

가. 시각디자인 부문

- 평면작품 : A1(59.4cm×84.1cm)으로, 두께 2 ~ 3cm이내의 나무패널 2매 이내
- 입체작품 : 가로, 세로, 높이 각90cm 이내로 하고 필요시 설명패널(A1 2매이내) 제출

나. 공예디자인 부문

- 가로, 세로, 높이 각 180cm 이내로 하고 작품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

다. 제품 및 환경디자인 부문

- 가로, 세로, 높이 각 180cm 이내로 하고 실물 또는 모형과 별도로 2매 이내의 설명패널 A1(59.4cm×84.1cm)을 동시 출품
- ※ 공예디자인, 제품 및 환경디자인 부문에 대해서는 디자인의 의도, 제작방법, 특기사항을 기술한 설명서를 A4용지 3매 이내로 제출

7. 출품제한

가. 1인 2점 이내로 출품(공동제작은 2인 이내)

- ※ 단, 시각디자인부문의 평면작품은 공동출품 불가

나. 국·내외에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이거나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다.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작품

8. 시상내역

가. 대상 1점 : 상장 및 상금 3,000천원

나. 금상 3점 : 상장 및 상금 각 2,000천원

다. 은상 3점 : 상장 및 상금 각 1,000천원

라. 동상 6점 : 상장 및 상금 각 500천원

마. 장려상 5점 : 상장 및 상금 각 200천원

바. 특선 및 입선(다수) : 상장

9. 기타사항

가. 출품작이 접수, 심사 후 출품자격 및 시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을때는 무효로 함.

나. 출품작이 시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시상 작품수가 변경될 수 있음.

다. 출품작은 기간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미반출품에 대하여는 주최측이 임의 처분함.

라. 입상작품의 저작권 및 모든 저작권은 경상북도에 귀속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과(☎053-950-3331)또는 경주상공회의소
(☎054-741-6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04-353호

운행제한 차량 통과높이 상향조정 노선 공고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474호, 2004. 7. 21)에 따라 운
행제한 차량 통과높이 상향조정(4.0m → 4.2m)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9. 23.

경 상 북 도 지 사

1. 통과높이 상향조정 노선

노 선 명	위 치			기 타 (사유, 시행기간)
	시 점	경 유 지	종 점	
국가지원 지방도 68호	포항 죽장 (국지도69호)		포항 청하	- 사 유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 3의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474호, 2004. 7. 21)에 따라 도로구조의 보존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노선을 지정하고 운행제한 차량 통과높이를 상향조정함으로 컨테이너 등의 물류수송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계속
"	포항 청하	포항 신광, 기계	경주 안강 (국도28호)	
"	청송 현서 (국도 35호)	청송 안덕	청송 현동 (국도 31호)	
"	상주 공성 (국도 3호)	구미 무을	구미 선산 (국도 59호)	
국가지원 지방도 69호	청도 금천 (국도20호)	경산 진량, 자인, 남산	경산 하양 (국도 4호)	
국가지원 지방도 79호	칠곡 왜관 (국도 33호)		칠곡 가산 (국도 5호)	
지방도 904호	경주 내남 (국도 35호)		경주 외동 (국도 7호)	
지방도 906호	김천시 경계 (국도 4호)	김천, 구미 국도33호	칠곡 천평 (국도 5호)	
지방도 919호	경산시 경계 (국도 25호)		경산 진량 (경산 IC)	
지방도 930호	포항 청하 (국도 7호)		포항 청하 (국지도68호)	

경상북도 공고 제2004-355호

측량업등록 공고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 신규등록을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9. 23.

경 상 북 도 지 사

업종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등록일자
일반 측량	06-05-2006	우성측량정보	박종태	경북 경주시 동천동 599-21번지 (054-744-5528)	2004. 9. 20

경상북도교육청

조 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4. 9. 23.

경 상 북 도 교 육 감

경상북도 조례 제2832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13시로 한다.

-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 제목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 ① 교육감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23조(특별휴가) 별표3의 「출산」란 중 일수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실성 있게 지급할 수 있도록 당직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근무시간의 조정, 전일근무제 조항 삭제 및 연가일수 축소 조정과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강화 신설(제4조의2)

나.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6조 제4항)

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근무시간의 조정(제12조)

라.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전일근무제 관련 조항 삭제(제16조)

마. 휴무일 확대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제18조)

바.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일수 확대 조정(제23조)

규 령

경상북도교육청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4. 9. 23.

경 상 북 도 교 육 감

경상북도 교육규정 제129호

경상북도교육청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폐지규정

경상북도교육청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폐지규정

1. 폐지이유

경상북도교육청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에 관한 규정은 토요일휴무제 실시 및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가 “토요일휴무제”로 변경됨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경상북도교육청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폐지함.

시 군

공 고

구미시 공고 제2004-472호

공 고

구미도시계획도로 비산 강변빌라옆 소도로(소3-4호)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관계 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 기간내 의견서를 구미시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9. 23.

구 미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국, 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 구미시청 도시과(☎450-6343, 5343)
3. 사업내용 : 다음과 같음

사업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규모	도시계획 결정일자	비 고
도시계획 도로사업	비산 강변빌라옆 소도로(3-4호)개설공사	비산. 91 ~ 비산. 97-3	도로개설 L=50M B=6.0M	경상북도고시 제1992-249호 1992. 8. 4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구미시 송정동 50번지

나. 성 명 : 구미시장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4년간

※ 관계서류 및 도면은 구미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도면게재생략)

기 타

공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4-253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9. 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8호선(영주 - 감천)

국도25호선(대구 - 상주)

3. 사용개시구간

가. 경북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 예천군 감천면 유리(연장=3.4km)

나.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 가산면 송학리(연장=2.4km)

4. 중요 경과지 : 중앙고속도로 영주 I.C, 가산IC

5. 전 용 구 간

가. 경북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 예천군 감천면 유리(연장=3.4km)

나.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 가산면 송학리(연장=2.4km)

6. 종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시 : 2004. 9. 25 12:00부터

8. 비 고 : 영주 - 감천 및 가산 - 상림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의 일부구간

을 우선 사용개시하여 지역교통의 안전 및 원활을 도모코자 함.

※ 첨부서류 : 노선도(지형도 1/50,000)

경상북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리도에서는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용자 대상업체를 모집합니다.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

- 지원규모 : 48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산업등
- 용자금액 : 11억원이내(시설 8, 운전 3), 대출금리(변동 5.7%)
- 신청서 접수 : 경상북도 기업노동과(☎053-950-3243)

■ 벤처기업 육성자금

- 자금규모 : 30억원
- 용자금액 : 3억원이내, 대출금리(년 3%), 2년거치 3년상환
- 신청서 접수 :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과(☎053-950-2795)

■ 유통업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 지원규모 : 연간 85억원
- 대상 및 지원한도
 - 시장재개발 · 재건축(40억원), 임시시장 설치(5억원)
 - 공동창고 설치(8억원), 점포시설 개선(1억원)
- 용자조건 : 대출금리(년 5.17%)
- 신청서 접수 : 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053-950-2793)

■ 중소기업 운전자금

- 대상 : 제조·건설·무역·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운수업 등
- 용자한도액 : 일반업체(3억원내), 우대업체(5억원내)
- 이차보전 : 1년간 3%
- 신청서 접수 :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

- 위의 자료는 경상북도보(2004. 1. 29자)에 상세히 게재